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06.24] (제정) 2024.06.24 조례 제3053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550-676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택예방접종 종류)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인플루엔자
- 2. 대상포진
- 3. 그 밖에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인플루엔자
- 가.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
- 나.「장애인 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다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라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마.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
- 바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
- 사. 농장종사자, AI대응요원
- 2. 대상포진
- 가. 65세 이상 군민
- 나. 18세 이상 면역저하자
-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예방접종 실시기관) 예방접종은 완도군 소재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「지역보건법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

제5조(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)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,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.

제6조(비용지원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.

제7조(환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- 2. 다른 시·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
- 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
- ② 군수는 국외이주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질병관리청의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에 따른다.

부 칙(2024. 6. 24. 조 305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